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놀이터 포함>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23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29.

다. 회 부 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있는 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함)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놀이, 운동 등을 위하여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놀이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교장이 유지·관리해야하는 학교시설에 놀이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u>급식시설</u> ,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 ----- ----- ---- <u>급식시설, 놀이터(유치원·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u> ,----- ----- ----- ----- ----- ----- ----- ----- ----- ----- -----.
② ~ ⑦(생략)	② ~ ⑦(현행과 같음)

놀이터 바닥재로 탄성포장재가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 경기도 내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소재한 놀이터의 바닥재에서 PAHs¹⁾ 등 유해

1)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를 의미하며, 이를 구성하는 18개 화합물 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함.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²⁾.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학교장이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등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로 교사대지(校舍垞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만을 예시로 들고 있어 놀이터가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학교시설에 놀이터(유치원·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놀이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지·관리할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의 유지·관리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서는 규율의 대상이 되는 놀이터의 범위를 유치원·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하였는데, 놀이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외에도 특수학교, 중학교 등에서도 설치될 수 있음. 놀이터가 설치되는 학교의 종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크지

2) 경기일보 연작 기사,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앞으로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기존에 놀이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던 타 법률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율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관리 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 어린이놀이시설에는 교내 놀이터가 포함⁴⁾⁵⁾되고 교내 놀이터의 관리 주체는 학교장이며,

현행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가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활동공간에는 놀이터가 포함⁶⁾되고 교내 놀이터의 관리자는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이 교내 놀이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는 불임자료 참조.

6)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공간과 연결한 공간을 포함한다)

터를 유지 관리할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타 법률에 규율되어 있어 입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⁷⁾).

교육부는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교사대지(校舍垞地)·체육장 등을 나열한 것은 학교시설에 포함하는 항목에 대한 예시로 교내에 설치된 놀이터는 현행법상으로도 학교시설로 볼 수 있어 이견이 없다면서도,

특수학교, 중학교 등에서도 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다른 종류의 학교에 설치되는 놀이터는 학교 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7)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기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구 중심의 놀이터 조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놀이터에 대해서는 중복 규율의 여지가 없으나 이는 소수에 불과함.

어린이놀이시설 (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